

화물자동차휴게소 설치 활성화

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(☎ 044-201-3710)

▶ 도시계획시설의 한 종류로 화물자동차휴게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여 화물차 운전자에게 편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.

- 지금까지는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도시·군계획시설규칙)」상 자동차정류장으로 설치 가능한 시설은 여객터미널, 물류터미널, 공영차고지, 공동차고지, 복합환승센터로 한정되어 화물차운전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화물자동차휴게소는 도시·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없어

- 화물차운전자의 휴식 및 운송주선의 원활화를 위한 화물자동차휴게소를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

-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·군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하여 화물자동차휴게소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.

☞ (참고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> 국토교통뉴스>보도자료 > 화물자동차휴게소 설치 활성화

<자동차정류장에 화물자동차휴게소 추가>

▶ 추진배경 :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화물자동차휴게소를 도시·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

▶ 주요내용

① 자동차정류장에 화물자동차휴게소

▶ 시행일 : 2014.12.31